

# 변경 대비표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 TDF2030 증권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
□ **변경 사항** : ① 고유재산 추가 투자

②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(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→ 일간 수익률 최대손실 예상액)

③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④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24. 3. 29.

□ **변경 내용**

구분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<b>요약정보</b>			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 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2. 29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-	<u>2024. 2. 29. 기준</u>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-	<u>2024. 2. 29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 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-	<u>2024. 2. 29. 기준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 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 형	기업공시서식 개정사 항 반영	〈트러스톤자산운용 집합투자기 구 위험등급 분류기준〉 2)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 우 <u>표준편차</u>	〈트러스톤자산운용 집합투자기 구 위험등급 분류기준〉 2)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 우 <u>위험등급 기준표(97.5% VaR 모형 사용)</u>
11. 매입, 환매, 전 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기업공시서식 개정사 항 반영	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신 청 가능시간 (신 설)	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신 청 가능시간 <u>〈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 료 부과 여부〉 기재</u>
13. 보수 및 수수료 에 관한 사항	동종유형 총보수 최 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2. 29. 기준</u>

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		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분리과세한도 :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1,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23.1.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분리과세한도 : 1,5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1,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24.1.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
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-	<u>2024. 2. 29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 25 기(2022.12.31)</u> <u>제 24 기(2021.12.31)</u>	<u>제 26 기(2023.12.31)</u> <u>제 25 기(2022.12.31)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-	<u>2024. 2. 29. 기준</u>
5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	고유재산 추가 투자	2) 추가 투자 (신 설)	<u>2) 추가 투자</u> <u>가. 추가 투자 금액 : 18억(투자일 : 2024.3.29.)</u>